

<p>4. 경주투표의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 있어 서 그 사유</p> <p>제51조본문중 “한국마사회”를 “납세의무자”로 하고,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1. 경주투표방법의 종류 및 경주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경주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</p> <p>2. 경주투표방법의 종류 및 경주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경주투표 적중수</p> <p>3. 경주투표의 적중자가 없을 경우에 있어 서는 그 경주투표권의 매수 및 금액</p> <p>제52조중 “한국마사회”를 “납세의무자”로 하 고 “마권세액”을 “경주마권세액”으로 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</p> <p>.....</p> <p>○委員長 李聲九 다음은 議事日程 第9項 서울特別市 짚형자동차에對한自動車稅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案을 審議하겠습니다.</p> <p>同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께서는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質疑하실 委員 없으시면 第9項에 대한 質疑 答辯을 마치겠습니다.</p> <p>그리면 議事日程 第9項 서울特別市 짚형자동차에對한自動車稅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案을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异議 없습니까?</p> <p>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</p> <p>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.....</p> <p>(參 照)</p> <p>서울특별시 짚형자동차에 대한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안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짚형자동차(이하 “짚형자동차”라 한다)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</p>	<p>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불균일과세)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다음의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배기량</th> <th colspan="2">씨 씨 당 세 액</th> </tr> <tr> <th>영업용</th> <th>비영업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,000씨씨 이하</td> <td>10원</td> <td>110원</td> </tr> <tr> <td>2,000씨씨 이하</td> <td>10원</td> <td>140원</td> </tr> <tr> <td>3,000씨씨 이하</td> <td>12원</td> <td>165원</td> </tr> <tr> <td>3,000씨씨 초과</td> <td>15원</td> <td>20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제3조(사무처리의 위임)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무는 당해 과세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.</p> <p>제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.....</p> <p>○委員長 李聲九 다음은 議事日程 第10項 서울特別市公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審議하겠습니다.</p> <p>同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께서는 質疑하여 주십시오.</p> <p>더 質疑하실 委員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10項에 대한 質疑 答辯을 마치겠습니다.</p> <p>따라서 議事日程 第10項 서울特別市公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异議 없습니까?</p> <p>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</p> <p>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.....</p> <p>(參 照)</p> <p>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23조증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	배기량	씨 씨 당 세 액		영업용	비영업용	1,000씨씨 이하	10원	110원	2,000씨씨 이하	10원	140원	3,000씨씨 이하	12원	165원	3,000씨씨 초과	15원	200원
배기량	씨 씨 당 세 액																	
	영업용	비영업용																
1,000씨씨 이하	10원	110원																
2,000씨씨 이하	10원	140원																
3,000씨씨 이하	12원	165원																
3,000씨씨 초과	15원	200원																